

2019년도 제8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6. 10.(월요일), 16:3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강상욱, 백대용, 손승우(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81회)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500건(안건번호 제2019-45498호~47047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계정 799건(안건번호 제2019-3656호~4454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기로 의결하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제공 거절 사실이 제출되지 않은 2개 안건,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66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22개 안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8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8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4쪽의 이용자 아이디, 5쪽의 웹하드 사이트명, 이용자 아이디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웹하드 사이트명은 공개하되, 이용자 아이디는 비공개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이용자 아이디는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45498호~47047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3,500건임
안전번호 제2019-45498호, 45499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네이버 밴드 운영자가 웹툰 한 화 전체분량을 직접게시 형태로 제공한 사안임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위 민원인은 웹툰 '★★' 106화, '☆☆' 18화를 제공하고 있는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하였음
한편 우리 심의위원회의는 지난 전체위원회에서 네이버 밴드에서 불법 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경우라면 해당 밴드의 특성을 종전과 같은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고 시정권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논의한 바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웹툰 한화 전체분량을 직접게시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웹툰은 현재 '투믹스' 웹페이지를 통해 유료로 제공되고 있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19-45498호, 45499호 네이버 밴드의 웹툰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참고로 심의대상 게시물의 밴드명은 '○○○○○○○○○○(○○○○)'로, 널리 알려진 '●●●●●●●●●●(●●●●)'와는 별개의 단체로 보임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의 밴드명은 마치 ‘●●●●●●●●●●’ 공식 밴드인 것으로 오인하게 함
- B 위원 : 과거 심의위원회에서 밴드 운영자가 직접 올린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가결하였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금번 심의대상 게시물은 온라인서비스가 직접 게시한 경우와 다름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는 해당 네이버 밴드의 개설자인데, 네이버 밴드 서비스의 이용자임
- B 위원 : 충분한 답변이 되었음
- C 위원 : 이견 없이 가결 의견임
- A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45498호, 45499호는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45500호, 45501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네이버 이용자가 최신 영화 전체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영화는 2018년 1월과 2019년 11월 국내에 개봉한 영화들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19-45500호, 45501호 네이버 블로그의 영화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함

- A 위원 : 이견 없이 가결 의견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45500호, 45501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만장일치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19-45502호~47047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음악, 프로그램, 게임, 만화, 출판, 영상물 등을 웹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 B 위원 : 단순 불법복제물이므로 이의 없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A 위원 : 이견 없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45502호~4704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45498호~47047호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3656~4454호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기로 의결하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제공 거절 사실이 제출되지 않은 2개 안전,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66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22개 안전은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이 제8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8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6. 17.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

위원 백대용